

법무사연수원규칙

[1969年 3月 30日 制定]

變更 1976. 7. 10. 議決 變更 1990. 5. 11. 議決
變更 1991. 5. 31. 議決 變更 1992. 5. 29. 議決
變更 1997. 2. 27. 議決 變更 2004. 5. 28. 議決
變更 2006. 6. 30. 議決 變更 2007. 6. 29. 議決
變更 2008. 6. 27. 議決 變更 2011. 5. 30. 議決
變更 2014. 6. 26. 議決 변경 2016. 6. 29. 의결
변경 2017. 6. 27. 의결 변경 2023. 6. 29. 의결

第1章 總 則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법무사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조직, 운영 기타 법무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9.>

제2조 (관장사무) 연수원은 법무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등록 전 연수교육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사교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6.29.>

第3條 (研修教育方針) 第2條의 研修教育은 法務士業務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實務能力을 배양시키고 敎養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第2章 組織과 運營委員會

第1節 組 織

제4조 (조직) ① 연수원에 원장과 부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6.6.29.>

② 원장은 연수원의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6.29.>

③ 副院長은 院長을 補佐하며 院長이 闕位되거나 有故時에는 院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제5조 (연수원장 등) 협회장은 연수원장이 되며, 상근부협회장이 부원장이 된다. <개정 2006.6.30., 2016.6.29.>

제6조 (사무국) ① 연수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事務局에는 局長과 필요한 職員을 두며, 協會事務局職員이 그 職을 兼任한다.

③ 事務局長은 院長의 命을 받아 事務局의 事務를 管掌하고 소속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2節 運營委員會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연수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연수원의 원장, 부원장과 각 지방법무사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委員會에 委員長과 副委員長 1人을 둔다.

④ 委員會에 專門委員 1人을 둔다. 전문위원은 협회 전문위원 중 연수원장이 지명한 전문위원이 兼職한다. <개정 2007.6.29., 2017.6.27.>

제8조 (위원장 등) ① 연수원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副院長이 副委員長이 되고 委員長을 補佐하며, 委員長 有故時에는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③ 專門委員은 研修教育의 改善方案에 관하여 研究・檢討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정 및 개폐의 건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9.>
2. 研修教育計劃의 樹立 및 變更에 관한 사항
3. 研修教育實施에 관한 사항
4. 연수원의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6.29.>
5. 被研修教育者의 受講登錄金決定에 관한 사항
6. 研修教育對象者의 選拔基準에 관한 사항
7. 講師의 委囑에 관한 사항
8. 기타 院長이 附議한 사항

第10條 (委員會의 召集) ① 委員會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 委員會를 召集함에는 會日의 5日前에 議事日程을 委員會構成員에게 適當한 方法으로 通知하여야 한다. 그러나 緊急한 때에는 召集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第11條 (決議方法)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議長이 된다.

② 委員會의 決議는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構成員 過半數로써 한다. 그러나 可否同數인 때에는 議長이 決定한다.

③ 專門委員은 委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하거나 會議案件에 대한 說明 등을 할 수 있다.

第12條 (書面に 의한 決議) ① 委員長은 필요한 때에는 書面に 의한 議決을 할 수 있다.

② 決議의 目的事項에 대하여 在籍構成員의 過半數가 同意한 때에는 書면에 의한 決議가 있는 것으로 본다.

第13條 (議事錄) ① 委員會의 議事に 관하여는 議事錄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 ② 議事錄에는 議事의 經過要領과 그 結果를 기재하고 議長과 出席委員 2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第3章 研修教育運營

第1節 研修教育課程

제14조 (연수교육과정) 연수원에 두는 연수교육과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6.29.>

第15條 (研修教育計劃) ① 研修教育計劃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研修教育課程의 實施計劃
2. 研修教育課程別 教科目, 科目別時間, 研修教育期間 및 人員(또는 豫定人員)
3. 研修教育對象者の 選拔基準(會員班의 경우에 限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 法務士規則 第16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前 研修教育에 관한 基本計劃의 承認申請과 같은 規則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會員研修教育計劃의 報告는 協會長이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第16條 (研修教育의 實施) 研修教育은 研修教育計劃에 따라 實施하여야 한다.

제17조 (교과목) 연수원에서 수강할 교과목은 별표2와 같으며 연수교육과정별 구체적인 교과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교재) ① 교재는 연수원에서 편찬한다. <개정 2016.6.29.>

② 연수원장은 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연구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第18條의 2 (認定研修教育) ① 第14條의 研修教育課程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하나에 參與한 때에는 協會의 審議를 거쳐 그 參與時間을 研修教育時間으로 認定받을 수 있다.

1. 外國에서의 연수프로그램의 講義 및 受講. 다만, 外國에서 講義 및 受講한 당해 연수프로그램이 당해 國家의 法律家團體에서 法律研修로 認定되고, 이를 證明할 수 있는 資料를 協會에 提出한 경우에 限한다.

2. 論文, 書籍 등의 著述活動 등에 의한 자기학습프로그램

3. 協會가 認定하는 다음의 研修活動

가. 政府機關, 協會 및 國內外的 公益團體가 主管 또는 後援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에의 參席(發表, 討論, 傍聽 등)

나. 學會가 主管하는 세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에의 參席(發表, 討論, 傍聽 등)

다. 海外研修

라. 會員을 대상으로 하는 研修에 教育者로 參與하는 活動

마. 其他 會員의 研修目的에 부합하는 研修活動

바. 사이버 研修教育

② 제1항의 研修教育에 參與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申請書와 필요한 書類를 添附하여, 그 參與時間을 研修教育時間으로 認定해 줄 것을 協會에 申請할 수 있다.

1. 研修를 실시한 機關, 團體 또는 學術團體 등의 概要

2. 研修日時, 場所 및 所要時間

3. 研修主題, 內容 및 研修方法

4. 研修를 담당한 講師의 약력 또는 發表者の 약력

5. 出席管理 등 研修結果報告書 또는 제1호의 機關 등에서 발급한 參
席確認書

6. 기타 協會에서 보완을 要請한 事項

③ 協會는 제2항의 申請이 있는 경우 研修敎育院運營委員會 審査小委
員會의 심의를 거쳐, 당해 會員의 研修 全部 또는 一部를 研修敎育
時間으로 認定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30.>

第2節 登 錄

제19조 (수강등록) ① 등록전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
라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3.6.29.>

1. 시험합격자반은 개강일 10일전까지

2. 자격인정자반은 개강일 5일전까지

② 제1항의 수강등록은 별지 제1호의 양식의 수강등록신청서에 의하
여야 한다. <개정 2023.6.29. 별지 제1호 양식변경>

③ 회원반의 연수교육의 지명을 받은 법무사는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개강일 3일전까지 연수원에 수강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④ 제3항의 受講登錄은 별지 제2호 양식의 受講登錄申請書에 의하여
야 한다.

⑤ 수강등록신청인은 연수원에서 정한 수강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제20조 (회원연수교육대상자의 지명) ① 연수원장은 개강일 3주일전에
각 지방법무사회장에게 회원연수교육대상인원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지방법무사회장은 소속회원중 회원연수교육대상

자를 지명하여 그 연수교육일정과 수강등록금을 별지 제3호 양식의 수강등록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고 그 명단을 연수원장에게 개강일 1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제21조 (수강연기신청) ① 시험합격자반 또는 자격인정자반의 수강등록을 한 사람이 연수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개강일 전일까지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수강연기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 회원반의 연수교육대상자로 지명받은 사람이 수강등록전에 연수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개강일 5일전까지 소속지방법무사회를 거쳐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 수강연기신청서를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등록 후에 연수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양식에 의한 수강연기신청서를 개강일 2일전까지 직접 연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③ 第2項의 受講延期申請書에는 診斷書 기타 受講할 수 없는 부득이한 事由있음을 疎明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수강연기신청인에 대한 조치) ① 연수원장은 시험합격자반 또는 자격인정자반의 수강연기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연기사유를 가리지 않고 수강의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② 연수원장은 회원반의 수강연기신청사유가 수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연기신청을 불허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③ 연수원장은 회원반의 수강연기신청사유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인 경우에 그것이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인 때에는 이를 등록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등록취소 여부를 심사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④ 연수원장은 회원반의 등록연기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그 연기신청인을

차기 연수교육대상자로 우선지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第23條 (회원연수교육 불응자에 대한 조치) ① 연수원장은 회원반의 연수교육대상자로 지명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차기 연수교육대상자로 우선지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指名받은 사람이 次期 研修教育에 있어서도 정당한 事由없이 研修教育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協會長名義로 所管地方法院長에게 懲戒事由를 通知하여야 한다.

第3節 研修教育

제24조 (교과목 담당) 교과목은 연수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16.6.29.>

第25條 (研修教育方法) 研修教育은 講義, 討議, 事例研究, 實務修習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26조 (실무수습위탁) ① 연수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업중인 법무사에게 별지 제6호 양식의 위탁서에 의하여 시험합격자반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務修習을 委託받은 法務士(이하 “指導法務士”라 한다)는 다음 각號에 따라 修習指導를 하여야 한다.

1. 第17條의 教科目を 中心으로 하여 法務士로서의 敎養을 涵養케 하고 法務士業務全般에 걸쳐 指導한다.

2. 事件의 受任에서 終結에 이르기까지의 進展課程과 委任者와의 面談要領 기타 對人關係를 指導한다.
 3. 登記申請書 등 法務士業務關聯 各種 書類를 委任人의 委任趣旨에 適合하도록 作成하는 方法을 指導하며 이를 講評한다.
 4. 事務員의 採用과 監督에 관한 留意點을 指導한다.
 5. 實務修習時間은 週 25時間 以上으로 한다.
 6. 實務修習期間中の 出缺狀況을 點檢하고 修習態度, 修習成就度 등을 評定한다.
- ③ 지도법무사는 실무수습연수기간 종료후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양식의 실무수습연수종료보고서를 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제27조 (피연수교육자의 준수사항) 연수교육을 받는 사람은 연수교육기간중 연수원장이 연수교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第4節 修了 및 賞罰

- 第28條 (修了)** ① 被研修教育者가 總授業時間의 100분의 85이상을 受業한 때에는 修了한다.
- ② 試驗合格者班 또는 資格認定者班의 課程을 修了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8호 양식에 의한 研修教育畢證을 수여한다.

제29조 (표창) 연수원장은 연수교육기간중 공로가 있고 다른 피연수교육자의 모범이 된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제30조 (퇴교) ① 연수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연수교육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1. 이 규칙 또는 연수원장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개정 2016.6.29.>

2. 정당한 事由없이 2日 이상 缺席한 때

3. 學習態度가 극히 不良한 때

4. 疾病 기타 事由로 研修教育을 계속할 수 없는 때

5. 研修教育에 관한 指示에 服從하지 아니한 때

② 연수원장은 회원반의 피연수교육자의 퇴교를 명한 때에는 그 사람을 차기 연수교육대상자로 우선지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第4章 補 則

第31條 (研修教育實施結果의 報告) 法務士規則 第16條第4項과 第57條의 各 規定에 의한 研修教育實施結果의 報告는 協會長이 書面으로써 하여야 한다.

제32조 (문부비치) 연수원에는 사무처리에 필요한 문부를 비치한다. 문부의 비치에 관하여는 협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6.29.>

第33條 (講師料) 講師에 대하여는 委員會가 정하는 講師料를 支給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法務士教育院規則의 廢止）法務士教育院規則은 이 規則 施行日
에 이를 廢止한다.

附 則 <변경 2004. 5. 28.>

第1條（施行日）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06. 6. 30.>

①（施行日）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07. 6. 29.>

①（施行日）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08. 6. 27.>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 <변경 2011. 5. 30.>

이 規則은 總會의 議決이 있는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변경 2014. 6. 26.>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16. 6. 29.>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17. 6. 27.>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변경 2023. 6. 29.>

이 규칙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연 수 교 육 과 정

과 정 별	대 상 자	연수교육기간
시험합격자반	법무사시험합격자로서 등록을 하려는 사람	12주, 다만 법무사법 제5 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일부면 제자는 3주 <단서신설 2008.6.27.>
자격인정자반	법무사자격인정자로서 등록을 하려는 사람	1주
회 원 반	등록을 한 지방법무사회 소속회원	1주이내

[별표2]

1. 등기실무(부동산등기, 상업등기)
2. 가족관계등록실무 <변경 2008.6.27.>
3. 공탁실무
4. 비송실무(민사비송, 상사비송)
5. 통합도산법개론 <변경 2008.6.27.>
6. 민사신청실무
7. 민사집행실무(사법보좌관업무 I·II 포함) <변경 2023.6.29.>
8. 민사소송실무
9. 형사소송실무
10. 가사소송실무
11. 성년후견실무 <신설 2023.6.29.>
12. 지방세실무 <신설 2023.6.29.>
13. 교양특강
14. 기타 필요한 과목

<별지 제1호 양식> <변경 2016.6.29., 2023.6.29.>

수강등록신청서

[illegible]

<별지 제2호 양식> <2016.6.29.>

수 강 등 록 신 청 서		
법무사	성 명	
	등록번호	제 호
소속지방회경유		년 월 일 지방법무사회장 ㉠
본인은 귀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회원반의 연수교육을 받고자 수강등록을 신청합니다. 납부 : 수강등록금 원 년 월 일 위 법무사 ㉠ 법무사연수원장 귀하		

수 강 등 록 통 지 서		
법무사	성 명	
	등록번호	제 호
귀하는 아래와 같이 실시되는 회원연수교육에 그 대상자로 지명되었으니 이 회를 거쳐 법무사연수원에 수강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 간 : 2. 장 소 : 3. 수강등록금 : 원 년 월 일 지방법무사회장 ㉠ 귀하		

<별지 제4호 양식> <2016.6.29.>

수강연기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본인은 귀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는 시험합격자반 자격인정자반 의 등록전 연수교육을 받고자 수강등록을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수강연기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월 년

신청인

인

법무사연수원장 귀하

위 탁 서

성 명 :

등록번호 :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연수대상자에 대한 실무수습을 귀하께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법무사연수원장 인

연 수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자 격	년 월 일 시험합격	합격증번호	제 호
연수개시연월일		년 월 일		
연수종료예정일		년 월 일		

<별지 제7호 양식> <2016.6.29.>

실무수습 연수종료보고서							
연 수 대상자	성명		생 년 월 일				
	주소						
	자격	년 월 일 시험합격			합격증번호	제 호	
연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주)						
출결상황	주간 주간순서	월	화	수	목	금	토
	제 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계 시간						
	제 주	/	/	/	/	/	/
	계 시간						
	제 주	/	/	/	/	/	/
	계 시간						
평 가	수습태도						
	수습성취도						
	종합평정						
위원에서 위탁한 위 대상자에 대한 실무수습연수를 위와 같이 종료하였으므로 이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지도법무사 인 법무사연수원장 귀하							

(주) 수습태도 및 성취도란에는 그 특기사항을 간결하게 서술적으로 기재하고, 종합평정란에는 출결상황, 수습태도 및 성취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아주우수, 우수, 양호, 미흡으로 구분 표시함.

<별지 제8호 양식> <2016.6.29.>

제 호

연 수 교 육 필 증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의 사람은 당원에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실시한 시험합격자반
자격인정자반 의 등록전 연수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법 무 사 연 수 원 장 ㉠